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840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01292	복기왕의원	2024.7.2.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8.) 상정 및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4.9.) 상정 및 축조심사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3	복기왕의원	2024.7.2.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및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8.) 상정 및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4.9.) 상정 및 축조심사

건 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4.9.) 상정 및 축조심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 률안	2201294	복기왕의원	2024.7.2.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및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8.) 상정 및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4.9.) 상정 및 축조심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 률안	2201295	복기왕의원	2024.7.2.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및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8.) 상정 및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4.9.) 상정 및 축조심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예	2201296	복기왕의원	2024.7.2.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건 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상정 및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8.) 상정 및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4.9.) 상정 및 축조심사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 률안	2201297	복기왕의원	2024.7.2.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및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8.) 상정 및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4.9.) 상정 및 축조심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01396	박충권의원	2024.7.4.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8.) 상정 및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4.9.) 상정 및 축조심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2203556	황정아의원	2024.9.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8.)

건 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관한 법률안				상정 및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4.9.) 상정 및 축조심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97	노종면의원	2024.11.26.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8.) 상정 및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4.9.) 상정 및 축조심사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9.)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4. 14.)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연구데이터는 단순한 연구의 부산물을 넘어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으

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기조 아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연구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의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법률에 규정하고, 연구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와 안전한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

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 연구자 권리 보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 생산·관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보유 및 관리하도록 하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연구개발기관은 보유·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하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화, 품질관리 및 보안대책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사.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간의 설정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아. 국가연구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용자에게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국가연구데이터의 추가적 가공·편집·결합·연계 등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비밀유지의무, 벌칙, 과징금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4. 부대의견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제도가 중소기업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 및 공유·활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4. “국가연구데이터”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연구장비 이용,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연구결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규모·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연구데이터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가 원활하게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국가연구데이터가 원활하게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자(이하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라 한다)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과 윤리를 준수하고,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권리의 보호 등)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나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서 국가연구데이터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②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비중에 따라 각 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③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표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의 성과를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국가연구데이터의 사용·수익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2장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제7조(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분야별 전문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연구데이터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국가연구데이터 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및 제공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점검 등에 관한 지원
4.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자동화시스템의 설계·개발·구축 및 관리
5.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표준화 기술 등의 개발 지원
6.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교육 지원
7. 국내외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연구데이터센터가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연구데이터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업무수행 실태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센터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분야별 전문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이하 “분야별 전문센터”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분석도구 등의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정부는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야별 전문센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문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야별 전문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수행 실태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야별 전문센터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분야별 전문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연구데이터 등록·활용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저장소의 확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국가연구데이터 등록·관리·활용 등에 관한 추진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식 제고 및 교육훈련) ①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경제적 가치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 및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 및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식 제고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 등을 통한 데이터 분석·활용, 민감정보 암호화 및 국가연구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제2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연구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업·단체 등과의 국가연구데이터 교환·공유 방안
2. 국가연구데이터의 국제적인 활용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제공동사업 등의 지원
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관련 기술·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지원
5.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국제적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제16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연구개발기관에서 공개하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등록·연계하고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센터는 소관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연구데이터 전문플랫폼(이하 “전문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과 전문플랫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간 상호 연계·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관·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과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

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의 연구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생산한 국가연구데이터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소의 설치·운영 및 연계에 관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또는 분야별 전문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취득·생성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계획(이하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데이터가 취득·생성되지 아

니하거나 등록·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중에서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 범위 및 비공개 근거에 대한 사항은 평가에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보유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의 제출 시기,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연구데이터의 현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또는 연계되는 정보는 핵심 기술 내용 등 연구개발기관의 영업·경영·기술상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는 범위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연계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호환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 및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연계된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표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 및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공개를 유보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와 협력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연계된 국가연구데이터 중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품질진단·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는 관리 중인 국가연구 데이터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촉진

제22조(공개 원칙)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확보하고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데이터는 그 성격, 중요도 및 민감성 등에 따라 공개의 대상 및 범위, 이용주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비공개 대상) 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

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

3. 연구개발기관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구데이터관리계획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명시한 정보

4. 그 밖에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개 사유(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하여는 20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연계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또는 연계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비공개 기간 종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계속 해당함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비공개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또는 연계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또는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의 결정, 세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의 비용 부담 등) ①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는 국가연구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출처를 이용조건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과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이용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승계한 기관 또는 연구자가 정한다.

제25조(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승계한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추가적인 가공·편집·결합·연계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 활용 가능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등 결과물을 창출한 경우 그 결과물을 판매하거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 또는 이용료 부과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분야별 전문센터 및 연구개발기관 등에 해당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는 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의 이용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격, 중요도 및 민감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분쟁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업무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
3. 제2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제28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30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면책)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활용에 관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 등으로 인하여 국가연구

데이터활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국가연구데이터가 공개된 경우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 등 이를 활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활용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연구데이터 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가연구데이터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3항(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플랫폼·전문플랫폼 구축과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